

물 품 구 매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총칙) 구매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자”라 함은 (주)석문에너지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아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직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_____ 사장 또는 계약담당직원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구매물품”이라 함은 대기환경설비 화공약품 중 활성탄을 말한다.
4. “납품장소”이라 함은 이 계약에 따라 구매한 활성탄을 납품하기로 예정된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산단4로 341번지 소재 발전소 또는 (주)석문에너지가 지정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제3조(최초납품일) ① 해당 화공약품(중탄산나트륨)에 대한 납품일은 2020년 12월 01일부터이며, 최초 납품일은 발전소 사정 등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물품구매계약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주문서 및 기타 계약에 관한 문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지닌다.
-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

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2항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당시 구매자의 사용량 추정 산출 기준 금액 보다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본 항의 동 계약금액이 동 기준계약금액 보다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 할 수 있다.

③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위 보증서 등의 계약보증기간을 연장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구매자에 귀속한다. 단,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귀속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현금 납부 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8조(계약단가, 계약수량)

구 분	규격	계약단가(원/kg)	계약수량(kg)	비 고
활성탄	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따름			부가가치세 별도

① 계약수량은 반드시 납품되어야 하며, 계약수량 기준으로 제16조(대가의 지급)에 의해 대가를 지급한다. 단, 구매자의 발전계획, 발전소운전상태에 따라 계약수량이 조정될 수 있다.

② 계약단가는 규격 기준 이상의 물품을 기준으로 구매자의 지정된 장소의 현장도착도 가격으로 한다.

③ 구매자에게 인도시까지의 국내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 수송비등 기타 비용 등이 포함된 단가이며, 소유권 이전시(위험부담 분기점)까지의 모든 책임과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제9조(주문서 발급) ① 구매자는 매주 납품물량을 납품 2일전까지 주문서를 통하여 주문한다. 또한 신규 물량을 추가 계약시 중복하여 주문서를 발행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구매자의 발전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변경 주문할 수 있으며, 계획예방 정비 또는 기타 사유로 발전소 운영이 중지된 경우에는 물량공급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물량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통해 공급수량 및 공급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구매자의 동의를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물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요청 기일 내 공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구매자가 판단하는 경우 구매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신 공급케 하거나 별도의 공급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구매자에게 발생된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⑤ 구매물품의 실 발주물량은 구매자의 소요판단 물량에 의하며, 구매자의 사업계획 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는 계약물량이 증감될 수 있다. 다만, 계약된 수량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감할 경우에는 구매자와 계약상대자의 상호 동의에 의하며, 추가 또는 변경주문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공급 소요일을 충분히 감안하여 납기일 최소 15일전까지 사전 요청하여야 한다.

⑥ 납품은 본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주문 건별 납품수량, 납품장소, 납품수단과 납기 등 납품관련 기타 필요사항은 구매자가 주문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⑦ 발전소 화공약품의 수급안정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조달하는 물품의 생산현황 등 필요자료 제공에 대한 구매자의 요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별도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하는 재고를 보유하여야 한다.

⑧ 본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해 후속 계약체결(또는 입찰)시까지 구매자는 주문서를 발급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공급하여야 한다.

제10조(운반차량 및 포장) ① 본 물품 운반시 사용되는 모든 운송차량은 운반적재함내의 화공약품이 외부로 이탈하지 않는 밀폐형으로 된 BCT 차량으로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화공약품의 운송 시 도로교통법 및 환경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유권 및 위험) 구매자가 주문한 물품의 소유권 및 위험부담의 이전은 계약상대자의 인도 장비, 설비 및 구매물품이 구매자의 지정된 장소에 통과할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구매자로 이전된다.

제12조(검수) ① 약품의 검수는 발전소 도착장소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15조(계약이행상의 감독)에 의거 구매자가 필요시 운반차량에 상차되기 이전에 검수할 수 있다.

② 검량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구매자의 계중기에 의해 검량된다. 계중기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검량은 적재단위별 용적과 비중치에 의한 중량계산법을 통해 결정된다. 다만, 계약상대자 사정에 의해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자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수량표시는 kg으로 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④ 계약상대자에 의해 공급된 약품은 제13조(규격 및 규격검사)에 의해 검사한다.

제13조(규격 및 규격검사) ① 본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약품의 주요 규격은 계약특수조건 제6조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최초 납품일 및 연 1회 공인된 시험기관을 통하여 검사가 이루어진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규격검사 시험 결과가 계약상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구매자는 인수 거부조치나 감액지급 및 감량 등의 조건부 인수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기타 세부 사항은 계약특수조건 제5조 품질의 보증 및 관리, 제7조 규격 미달품의 처리 기준에 따른다.

제14조(인수) ① 인수 작업은 구매자의 발전설비 운전시간에 맞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매자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통상 근무시간외에도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② 구매자는 수급 상 필요한 경우에 주문 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재고품에 대한 품질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합격품에 대하여는 주문 후 규격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구매자는 제4조(계약문서)에 따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공장 시찰 등을 통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매자가 화공약품 규격에 대한 생산 감독 또는 중간검사사항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물품 납품계획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필요한 시점에 감독 또는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생산 감독이나 중간검사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마

치지 아니하고는 납품을 계속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진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단, 구매자와 협의를 통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의 지급은 납품된 물량에 대하여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매자는 제8조 및 13조, 14조에 의거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3조(규격 및 규격검사) 및 제14조(인수)의 규정에 의해 구매자가 물품을 인수 완료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구매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월 공급 수량등을 확인 후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물품 공급월 익월 말일에 현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5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 할 수 있다.

⑥ 구매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17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0년 11월 30일까지이다. 다만 계약기간 경과 후라도 계약상대자는 납품의무를 진다.

제18조(계약의 변경) ① 계약기간 중 정부의 제반정책, 제도개선 및 법령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조건의 일부 변경을 요구하였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해 해당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구매자는 화공약품 규격등의 변경으로 본 계약변경 필요시에는 쌍방 합의 후 소정의 절차에 의해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계약수량 중 미이행 잔여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 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구매자의 책임으로 제조 및 운송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계약담당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구매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검사소요일수를 초과한 경우, 또는 검사물량, 시험조건 등 특별한 사유로 별도로 정한 검사소요일수를 초과한 경우는 초과일수 만큼 지체일수에서 공제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당사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 구매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0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9조(지체상금) 제2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구매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사전 최고 후에도 계속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화공약품 구매규격상 시험성적 수치가 2회 이상 초과한 때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한 경우
 5. 제18조(계약의 변경)에 의거 계약변경과 관련하여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② 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 인수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구매자는 제21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구매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공급된 물품에 대한 금액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계약보증금)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배상책임) ① 계약상의 의무불이행 등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구매자의 발전계획 변경 또는 발전중단 등 구매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운송수단 등에 의해 구매자 또는 제3자의 시설물이 손상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신속히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송수단 등에 의해 오염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상대자 귀책 사유에 의한 오염이나 구매자 또는 제3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계약 상대자 책임과 비용으로 신속하게 오염제거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2항에서 규정한 원상복구, 오염제거 및 피해보상을 구매자가 지정한 기간내에 시행하지 않거나,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후 임의조치 하고 지급대상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란 당사자의 제어범위를 넘는 천재지변, 전쟁, 군사작전, 화재, 태풍, 국내외법률, 정부규제 및 조정 등의 사유에 의해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제1항의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즉시 계약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관계서류 및 법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련된 법률 및 시행령, 규칙, 조례, 및 구매계약일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신의 성실) 계약상대자는 당사에 납품한 물품에 관하여 선량한 계약상대자로서 성실하게 그 규격을 보장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물품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7조(분쟁) ① 계약상대자와 구매자간의 본 계약조항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 불일치 및 문제점 발생으로 상호 합의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의 분쟁, 불일치 및 문제점 발생일로부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시 까지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한다.

제28조(기타 일반사항) ① 본 계약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르며, 동 관행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